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3 선고 2021가단500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 론 종 결 2021. 10. 20. (피고 3에 대하여) 무변론 (피고 1, 2, 4, 5, 6, 7에 대하여)

판 결 선 고 2021. 11. 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, D, E, F, G, H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.
2. 피고 C, D, F, G, H, B에 대한 청구
: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3. 피고 E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태지영

별지